

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8. 7. 11(수) 09:32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32차 및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라디오방송국(FM) 신규허가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8-35-380)

- (주)광주방송, (재)극동방송, (재)기독교방송의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 계획(안)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,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신규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,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·사회적·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,
- 심사결과 총점 1,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 '허가'를 의결하고, 650점 미만일 경우 '조건부 허가' 또는 '허가 거부'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8-35-381)

- o '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'에 대하여 신승한 지상파방송정책과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,
- 방송사업자의 재허가·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18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동법 시행령의 제17조제3항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8-35-382~391)

- o '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'에 대하여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-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(8개사) 및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한 사업자(2개사)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조사('18. 2. 22. ~ '18. 3. 23.)를 실시한 결과,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<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내역 >

사업자명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
(주)네이버네트워크	2,500
라인프렌즈(주)	1,000
(주)스타벅스커피코리아	1,000
(주)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	3,500
(주)엔비즈소프트	2,000
(주)제이씨커뮤니케이션	3,500
제이씨현시스템(주)	1,000
(주)지에이엠	2,500
컨텐츠월드(주)	2,500
(주)투어로	2,500
계	22,000

7] 보고사항

가.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조건 미이행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

- '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조건 미이행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'에 대해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시 복지TV에 대하여 부가한 인정조건*이 이행되지 않아 인정조건 미이행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,
 - * 화면해설방송 비율 상향(계획:15%, 실적:9.9%),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(계획:5편, 실적:3편),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작(계획:8편, 실적:4편)
 - '19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심사 시 인정조건 위반 및 부적절한 지원행위를 명확히 고지하여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의 보고내용을 원안대로 접수함

나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'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'에 대해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, 소상공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※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-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신고서, 양도·합병·분할신고서, 휴업·폐업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방통위에 제출
-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상호, 소재지 및 소상공인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
-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 신고·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바뀜에 따라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(첫 화면과 연결화면 포함) 등에 이용약관을 공개하고,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공개
-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등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회의는 7월 18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47)